

의안번호	2219997
의 퇴 인	이상식의원
회 답 일	2026.7.30.
추계번호	26D3576

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수사본부 및 시·도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시 위원 15명의 참석을 규정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3억원 등 향후 5년간 총 15억원(연평균 3억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8~2032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8	2029	2030	2031	2032	합계	연평균
수사심의위원회 (안 제32조의2제6항 신설)	300	300	300	300	300	1,500	300

주: 1. 수사심의위원회(안 제32조의2제6항 신설)은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
 2. 개정안은 수사심의위원회 회의의 조건을 위원 15명 참석으로 규정하여 현행 경찰청 예규상 회의 참석 위원 10명 대비 회의당 5명이 증가하여 추가재정소요 발생
 3. 국가수사본부 위원회는 월 2회, 18개 시·도경찰청 위원회는 각 월 1회 개최하고, 참석수당은 회당 25만원이고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것으로 가정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2조의2제6항(수사심의위원회) 신설	수사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회의 시마다 무작위 추천한 위원 15명으로 구성(국가수사본부·시·도경찰청 위원회 공통)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32조의2제6항(수사심의위원회) 신설	○	—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 제32조의2제6항에 따라 수사심의위원회 회의에 위원 15명의 참석을 규정하여 현행 경찰청 예규 「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」의 회의 참석 위원 10명 대비 회의당 5명이 증가하여 추가재정소요 예상
- 본 추계에서는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의위원회를 월 2회, 18개 시·도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를 각 월 1회 개최하고, 참석수당은 회당 25만원이며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것으로 가정
-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가수사본부 및 시·도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회의 시 증원된 위원 5명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
- 본 추계에서는 수사심의위원회 수, 증원된 위원 수, 연간 회의 개최 횟수를 반영하여 산정한 지급건수와 참석수당을 곱하여 산출
 - (지급건수) 국가수사본부 위원회 120건(=1개×위원 5명×연 24회), 시·도경찰청 위원회 1,080건(=18개×위원 5명×연 12회)으로 연간 총 1,200건
 - (참석수당) 회당 참석수당 25만원을 적용하며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것으로 가정
- 추계결과, 개정안에 따라 수사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인원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매년 3억원 등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총 15억원으로 추계됨

[표 2] 수사심의위원회 회의 구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8~2032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8	2029	2030	2031	2032	합계
수사심의위원회 참석위원 증원	300	300	300	300	300	1,50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회의 개최 횟수(국가수사본부 월 2회, 시·도경찰청 월 1회) 및 참석수당(회당 25만원)을 가정하여 산출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